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80 발의연월일: 2024. 10. 24.

발 의 자: 박홍배·김현정·김한규

홍기원 • 박희승 • 김정호

안호영 · 염태영 · 민병덕

장경태 · 강준현 · 서영교

서영석 • 이재정 • 김민석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환경책임보험은 「보험업법」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음.

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현재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환경오 염피해로 인한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.

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.

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

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 신설).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2(보험사업의 관장 등) ①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.
 -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자는 환경 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, 중장기적 환 경오염피해에 대한 대응 및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태조 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한 다.
 - ③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대하여는 「보험업법」 제11 8조제1항·제119조·제124조·제131조·제132조·제133조·제134조 제1항·제136조·제162조·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"보험 회사"는 "보험자"로 본다.
 - ④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5조를 적용한다. 이 경우 "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"는 "보험자"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7조의2(보험사업의 관장 등)
	①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
	사업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한
	<u>다.</u>
	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
	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자
	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
	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
	료, 중장기적 환경오염피해에
	대한 대응 및 제38조의2에 따
	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
	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가입 대
	상 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한다.
	③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
	사업에 대하여는 「보험업법」
	<u>제118</u> 조제1항·제119조·제124
	조·제131조·제132조·제133
	<u>조·제134조제1항·제136조·</u>
	<u>제162</u> 조 · 제181조제1항을 적용
	한다. 이 경우 "보험회사"는
	"보험자"로 본다.
	④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
	사업에 대해서는 「금융소비자
	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5조를

적용한다. 이 경우 "금융상품	투직
접판매업자"는 "보험자"로	본
<u>다.</u>	